

2024년 진도군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수탁기관 모집 공고

슬레이트 처리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「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『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』 제5조에 따라 2024년 진도군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일

진도군수

1

위탁사업 개요

- 사무명 : 2024년 진도군 슬레이트 철거·처리지원 사업
- 기간 : 2024. 3. ~ 2024. 12.(10개월)
- 사업량 : 284동
- 사업비 : 1,080,000천원(국비540,000 도비108,000 군비432,000)
- 사업내용
 -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)의 지붕재 또는 벽체의 슬레이트 철거처리·개량 지원 및 사업 대행(방치 슬레이트 포함)
- 추진방법 : 전문기관 위탁추진(위탁 수수료 8%)

○ 추진업무

- 수행기관 입찰공고, 업체선정 등 입찰 발주 및 관리
- 작업현장 관리·감독 및 관련업무 제반사항
- 정산 및 결과보고, 자료제공·협조
- 진도군 슬레이트 관련 민원사항 해결
- 상기 각 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

2 위탁대행 기관 자격기준

- 슬레이트 해체·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”
-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-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·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

3 모집공고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2024 1. 17. ~ 2. 1. (15일간)
- 접수일 : 2024 2. 2.(금) 09:00 ~ 18:00
- 접수처 : 진도군청 환경수질과(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)
- 제출서류
 - 수탁기관 지원 신청서 1부
 - 수탁기관 현황 1부
 - 사업계획서 1부/※ 발표 자료(PPT) 별도 제출
 - 서약서 1부
 - 인감신고서 1부(법인 및 단체)

- 법인인감증명서(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) 1부
- 법인(단체)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
- 법인등기부등본(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) 및 정관 각 1부
- 평가자료 제출용 서식(1~3) 각 1부 및 증빙자료
- 기타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

4 수탁기관 선정방법

○ 선정방법

- 사업수행 능력(30점), 신용도(10점),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(60점)으로 구성(붙임 평가 기준표 참고)
-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탁자의 실적,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순으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(단, 최고득점자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)
- 공고결과 1개 수탁기관 신청 시 재공고하며, 재공고 후 단독 신청인 경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하되 60점미만 시 재공고 모집

○ 심사방법 : 서류 및 제안심사

○ 신청인은 적격자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10분 이내로 설명(PPT자료) 【질의응답(10분)】

- ※ 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으로 하고, PPT 파일은 심사 개최일 3일전 까지 제출 및 발표자료(10부)는 심사 당일까지 출력 후 배부
(발표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 또는 소속직원, 단체인 경우 운영대표자, 운영대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 하급자가 하며,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설명하고, 대표자가 아닌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)

○ 심사일시 및 발표

- 심사일시 : 2024 2. 16.(금) 14:00 (예정)
- 선정발표 : 심사 후 군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지

○ 위·수탁 협약 체결

- 선정된 수탁기관은 위탁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추진 부서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결정을 무효로 하고 다음 순위자와 협약체결

5

기타사항
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 후 열·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
 -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, 접수된 서류의 기간 산정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
 - 1개의 수탁자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, 재공고 후에도 1개 수탁자 신청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60점 이상이어야 함
 -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지정기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다음 순위의 사업신청자와 계약할 수 있음
 -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숙지 및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
 - 제출서류 중 발급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것을 제출해야 함
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환경수질과(☎ 061-540-3721)로 문의하시기 바람
- ※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- 붙임
1. 수탁기관 지원 신청서 1부.
 2. 수탁기관 현황 1부.
 3. 사업계획서(예시) 1부.
 4. 서약서 1부.
 5. 인감신고서 1부.
 6. 평가기준(안) 1부.
 7. 평가자료 제출용 서식(1~3) 각 1부. 끝.

【붙임 1】

진도군 슬레이트 철거·처리사업 수탁기관 지원 신청서

신청단체(법인)			
소재지			
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
설립일자			
설립목적			
재 산	계 : 천원(동산 : 천원, 부동산 : 천원)		
2024년 슬레이트 철거·처리사업 수탁기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
2024년 월 일			
상 호 :			
대 표 자 : (인)			
진도군수 귀하			
※ 실무 담당자:			
구비서류			
1. 수탁기관 지원 신청서 1부			
2. 수탁기관 현황 1부			
3. 사업계획서 1부			
4. 서약서 1부			
5. 인감신고서(법인 및 단체) 1부			
6. 법인인감증명서(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) 1부			
7. 법인(단체)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.			
8. 법인등기부등본(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) 및 정관 각 1부			
9. 평가자료 제출용 서식(1~3) 각 1부 및 증빙자료			
10. 기타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			

【붙임 2】

수탁기관 현황

- 1. 명 칭 :
- 2. 소재지 :
- 3. 대표자

성명(한자)	생년월일	주요이력

- 4. 설립근거 및 목적 :
- 5. 구성인력 현황
 - 가. 수탁기관의 기구(도표)표
 - 나. 임원명단

직위	성명	생년월일	주요경력 및 자격증	직업	비고

- 6. 설립일자 및 연혁

년 월 일	내용

- 7. 주요사업 내용 / 구체적으로 명기

제출자 상호: 대 표 자 : (인)

진 도 군 수 귀 하

【붙임 3】 사업계획서

진도군 슬레이트 철거·처리사업 위·수탁 대행

사 업 계 획 서

2024. . .

수탁기관명

【붙임 4】

서 약 서

○ 상 호 :

○ 대 표 자 명 :

위 수탁기관은 2024년 진도군 슬레이트 철거·처리사업 수탁기관 공모를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,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와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은 물론, 수탁기관 선정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으며,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위·수탁 협약체결 등 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제출자 상호 : 대 표 자 : (인)

진 도 군 수 귀 하

**2024년 슬레이트 철거·처리사업
위·수탁 사업자 선정(평가) 기준**

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수탁기관 선정(평가) 기준

I. 총 관

평가항목	세부사항	평가방법	배점 한도	평가기준
계			100	
1. 사업수행 능력	가. 처리실적	절대평가	5	· 처리가구 실적
	나. 사업기간	절대평가	5	· 위탁협약 실적
	다. 사업비 집행실적	절대평가	5	· 사업비 집행실적
	라. 기술인력	절대평가	5	· 감리원 기술 등급
	마. 감리인실적	절대평가	5	· 법인의 감리 실적
	바. 지역참여도	절대평가	5	· 본사소재지
2. 신용도	가.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	절대평가	5	· 최근 1년간
	나. 재정상태 건실도	절대평가	5	· 신용등급으로 평가
3.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	가. 사업수행 추진방향	상대평가	10	·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
	나. 사업수행 계획		10	
	다. 민원처리 계획		20	· 심사위원 평가
	라. 지역 업체 참여 여부 방안		20	

※ 선정위원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로 선정

II. 분야별 평가기준

1. 사업수행 능력(절대평가 30점)

가. 처리실적(5점)

(단위 : 가구)

구분	200 이상	150이상 200미만	100이상 150미만	100 미만	실적 없음
배점	5	4	3	2	1

※ 슬레이트 철거처리실적 제출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실적 증명서

※ 협약서 사본 및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로 대체 가능

나. 사업기간(5점)

구분	5년	4년	3년	2년	1년 이하
배점	5	4	3	2	1

※ 슬레이트 철거처리실적 제출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실적 증명서

※ 협약서 사본 및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로 대체 가능

다. 사업비 집행실적(5점)

구분	100%	98%이상	98%미만 94%이상	94%미만 90%이상	90%미만
배점	5	4	3	2	1

※ 유사용역 수행실적 “가” 증빙서류 활용 / 최하점수 1개만 적용

※ 국고보조사업 추진율 및 사업비 집행률 평가

라. 기술인력(5점)

구분	고급감리원 (1명 이상)	일반감리원 (1명 이상)	없음
배점	5	3	0

※ 상임이사, 등재이사, 정규직에 한함

마. 감리실적(5점)

구분	5건이상	4건이상	3건이상	2건이상	1건이하
배점	5	4	3	2	1

※ 최근 5년간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실적, 증빙서류 첨부

※ 공고일 이전에 완료된 신청기관 실적에 한함

바. 지역참여도(5점)

구분	전남	광주	전북 경남	충남·북 경북	기타
배점	5	4	3	2	1

※ 본사소재지 기준

2. 신용도(절대평가 10점)

가.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(5점)

- 최근 1년간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(과징금, 부과처분 포함),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
- 대상: 법인(단체), 대표자, 참여기술자

구 분	평가방법
지원 신청기관(대표자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합산기간 1월마다 0.2점씩 감점 -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
참여 기술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합산기간 1월마다 0.2점씩 감점 -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

※ 제공된 소정양식 성실히 작성 첨부

나. 재정상태 건실도(5점)

-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
- 회사채(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)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

회사채	A-이상	A-미만 BBB-이상	BBB-미만 B-이상	CCC+ 이하
기업어음	A2-이상	A2-미만 A3-이상	A3-미만 B-이상	C이하
기업신용	A-이상	A-미만 BBB-이상	BBB-미만 B-이상	CCC+이하
배점	5점	4점	3점	2점

※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/ 미첨부시 “2” 점 처리

3.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(상대평가 60점)

가. 사업수행 추진 방향(10점)

- 1)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업무 매뉴얼(환경부 2023)에 따른 사업 추진 방향
※ 2024년 환경부 지침 변경 시 변경 지침 적용
- 2) 매뉴얼 목차에 따라 5page 이내 작성

나. 사업수행 계획(10점)

- 1) 매뉴얼을 기준으로 우리군 실정을 반영하여 사업수행 계획 작성
 - 사업 대상자 및 업체선정
 - 면적 조사
 - 슬레이트 해체·처리 관리
 - 사업비 집행 및 정산

다. 민원처리 계획(20점)

- 1) 사업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민원 등을 종류별로 작성
- 2) 문제점 해소 및 민원처리 매뉴얼 작성

라. 지역 업체(석면해체·제거업,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) 참여 여부 방안(20점)

- 1)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도군 지역 업체 참여 방안 작성
- 2) 지역 업체와 외부 업체의 사업비 지급 비율을 반드시 명기
(※ 사업비 지급률 5% 오차범위 인정)
- 3) 사업시행 중 계약 미 이행 시 위탁수수료 삭감 동의서 제출
(※ 삭감 비율은 회사에서 결정, PPT 반드시 작성)

별표 1

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배점 기준

가.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평가 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

- 1) 사업수행계획은 60점 상대평가
- 2)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(10%), 우(20%), 미(40%), 양(20%), 가(10%)로 하고, 점수는 수(100%), 우(90%), 미(80%), 양(70%), 가(60%)로 참여업체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.

참여업체 \ 등급	수	우	미	양	가
2 개사	1	1	-	-	-
3 개사	1	1	1	-	-
4 개사	1	1	1	1	-
5 개사	1	1	2	1	-
6 개사	1	1	2	1	1

나. 사업수행계획 항목별 배분점수

평가항목 \ 등급	배점	수(100%)	우(90%)	미(80%)	양(70%)	가(60%)
I.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	60					
사업수행 추진방향	10	10	9	8	7	6
사업수행 계획	10	10	9	8	7	6
민원처리 계획	20	20	18	16	14	12
지역 업체 참여 여부 방안	20	20	18	16	14	12

서식 1

1. 사업수행 능력

가. 처리실적

사업명	처리가구	비고
합계		

※ 실적 증명서 첨부

※협약서 사본 및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로 대체 가능

나. 사업기간

사업명	발주기관	비고
합계		

※ 실적 증명서 첨부

※협약서 사본 및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로 대체 가능

다. 사업비 집행실적

사업명	사업비 (천원)	집행액 (천원)	집행율 (%)	비고
합계				

※ 가. 처리실적과 동일하게 기입(처리실적 누락 시 최저점)

라. 기술인력

구분	성명	생년월일	자격		비고
			종류	취득일	
고 급 감리원					
일 반 감리원					

※ 자격증 사본,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 첨부

마. 감리인실적

사 업 명	발 주 기 관	비 고
합 계		

※ 실적 증명서 첨부

※ 공고일 이전에 완료된 신청기관 실적에 한함

바. 지역참여도

상 호 명	본 사 소 재 지	비 고

※ 등기부등본 첨부

서식 2

2. 신용도

가.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

연번	사업명 (용역명)	입찰참가 제한기간 (개월)	업무정지 처분기간 (개월)	제재기관 및 사유		참여기술자		
				기관명	사유	성명	분야	기간
1								
2								

※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 기간에 따라 참여업체, 참여기술자 평가

나. 재정상태건실도

구	분	내 용	
1.	회 사 명		
2.	설 립 년 도		
3.	자 본 금		
4.	신 용 평 가 기 관		
구	분	평 가 등 급	비 고

※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제출

